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 · 광고 안내서

안내서 제·개정 이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내용
	2025.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본 안내서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내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의 광고 자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I. 목적

이 안내서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범위

이 안내서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등을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이거나,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 함량만을 단순히 계산하여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III. 판단 기준

1] 정의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미네랄,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1. ISO 16128-1*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의된 천연(유래) 원료를 사용하고, ISO 16128-2**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관으로부터 “천연화장품” 인증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미네랄, 미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1. ISO 16128-1*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의된 천연(유래) 및 유기농(유래) 원료를 사용하고, ISO 16128-2**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유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유래) 함량을 포함한 천연(유

- 라)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관에서 기관으로부터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품

* ISO16128-1: Cosmetics — Guidelines on technical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natural and organic cosmetic ingredients (Part 1: Definitions for ingredients)

** ISO16128-2: Cosmetics — Guidelines on technical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natural and organic cosmetic ingredients (Part 2: Criteria for ingredients and products)

2 표시·광고

완제품이 제1 정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천연 또는 유기농 원료의 함량(「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과 함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완제품이 제1 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원료가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원료라고 표시·광고할 수 없다.

* 불가능 표현 예시 : “천연(유래) 원료 000 사용“, “유기농(유래) 원료 000 함유“(완제품이 제1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다만, 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한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를 명확히 계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천연(유래) 또는 유기농(유래) 지수로 표시·광고가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 가능 표현 예시 : “천연(유래)지수 00%(ISO 16128 계산적용)“
“유기농(유래)지수 00%(ISO 16128 계산적용)“

3 실증 구비 자료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1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